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1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신달호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청년 1인가구가 달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시설 등 사업과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공공시설 사용 허가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
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년기본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조례)」(2023.2.28. 일부개정시행(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